

대구대학교와 국립산림치유원간의 산림복지서비스 확산 및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국립산림치유원은 ‘산림복지서비스’의 확산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‘삶의 질 향상’에 기여하고 미래인재육성 및 사회적 책임실천 및 기관발전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기관의 법령과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력하며,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① 대구대학교는 국립산림치유원에 아래 사항을 협조한다.

- 가. 산림복지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료 제공
- 나.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교·직원의 재능기부에 관한사항
- 다. 양 기관의 사회적 책임실천 및 기관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② 국립산림치유원은 대구대학교에 아래 사항을 협조한다.

- 가.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재학생의 현장견학 및 실습 협조
- 나. 교·직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협조
- 다. 양 기관의 사회적 책임실천 및 기관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3조(업무협약) 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약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신의성실의 원칙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18. 9. 14.



대구대학교

(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사업단)



국립산림치유원

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

총장 김 상 호



원장 연 평